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6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9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신영대 · 신정훈

오영환 · 윤미향 · 이광재

이용빈 · 인재근 · 한병도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상수도 계획은 현행 「수도법」에 따라 상수도 정책방향·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"전국수도종합계획"과 광역·공업용수도 공급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"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"을 환경부에서 각각 수립하는 체계로되어 있어, 국가정책-광역·공업용수도-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,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"전국수도종합계획"과 "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"을 통합하여 "국가수도기본계획"으로확대 개편하는 한편,

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"수도정비기본계획"은 명칭을 "수도정비계획"으로 하고,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

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(안 제4조)

물관리 일원화 이전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각각 수립하던 "전국수도종합계획"과 "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"을 "국가수도기본계획"으로 통합하고, 계획 수립 내용, 절차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수도정비기본계획 명칭 변경 및 수립체계 정비(안 제5조)

"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"을 "국가수도 기본계획"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"수도정비기본계획"은 명칭을 "수도정비계획"으로 하고, "국가수도기본계획"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5조)의 제목 "(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)"을 "(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"을 "국가수도기본계획"으로, ""종합계획"을 ""기본계획"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종합계획"을 "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수도 공급"을 "수도정책의"로, "정책 방향"을 "기본방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"개발계획"을 각각 "관리계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대체수원(代替水源)의 개발계획"을 "관리, 대체수원(代替水源)의 확보계획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6호 중 "수질개선"을 "수질 및 서비스 개선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종합계획"을 각각 "기본계획"으로 한다.

20. 제1호에서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·관리에 관한 계획 제4조(종전의 제5조)제4항 중 "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"을 "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(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면"

으로, "시·도지사(이하 이 항에서 "관계기관의 장"이라 한다)"를 "시·도지사"로, "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"를 "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종합계획"을 "기본계획"으로, "수도정비기본계획"을 "수도정비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종합계획"을 "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종합계획"을 각 "기본계획"으로, "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"를 "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5조(종전의 제4조)의 제목 "(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)"을 "(수도정 비계획의 수립)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환경 부장관과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"을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이 설치·관리하는"으로. "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"를 "국가수 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"로, "종합적인 기본계획(이하 "수도정비기본계 획"이라 한다)을"을 "계획(이하 "수도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" 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수도정비 기본계획"을 "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 장·군수는 수도정비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환경부장관

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 또는 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"을 "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 지사・시장・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"으로 하 며, 같은 조 제5항 중 "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을 "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 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"으로. "수도정비기본계 획"을 "수도정비계획"으로. "고시하고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그" 를 "고시하고 그"로 하고. 같은 조 제6항 중 "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 가 수도정비기본계획"을 "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 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가 수도정비계획"으로 한다.

제5조(종전의 제4조)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수도정비기본계획"을 "수도정비계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광역상수원 개발"을 "대체수원의 확보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"수질 개선"을 "수질 및 서비스 개선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"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"를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"로, "수도

정비기본계획을"을 "수도정비계획을"로, "수도정비기본계획의"를 "수도 정비계획의"로 한다.

9.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제48조제2항 중 "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
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"을 "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"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

제4조(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) | 제5조(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①특 ①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・광 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 | 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(광역시 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일반수 합리적으로 설치・관리하기 위 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 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 인 기본계획(이하 "수도정비기 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야 하다.

- 1.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・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 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 계획의 수립
- 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・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 외한다)의 경우에는 그 특별 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 별자치도・시・군이 설치・관

개 정 안

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 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 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특 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특 별자치도・시・군이 설치・관 리하는-----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 로 ----- 계획(이하 "수도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10 년마다 --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 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의 수립

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면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 다)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다.

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 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<u><삭 제></u>

③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</u>
<u>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</u>
·군수는 수도정비계획
- .
④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
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
·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
따라 수도정비계획

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을 기 본으로 하여야 한다.

-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 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 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 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한다)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

⑤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</u>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
장·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-
<u>수도정비계획</u>
고시
하고 그
<u>.</u>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
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
군수가 수도정비계획

- 다)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한다.
-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.
- 1. 2. (생략)
- 3. <u>광역상수원 개발</u>에 관한 사 항
- 4. ~ 8. (생략) <신 설>
- 10. (생략)
- 11.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
- 12. ~ 14. (생 략)
- ⑧ 삭 제
- ⑨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 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 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(광역 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제5항 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 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 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⑦ 수도정비계획------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대체수원의 확보-----4. ~ 8. (현행과 같음) 9.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 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수질 및 서비스 개 12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⑨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・군수---------- 수도정비계획을 ----------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 계획의 ------

제5조(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) 제4조(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)

-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, 용수의 효율적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<u>종합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<u>수도 공급</u> 목표 및 <u>정책 방향</u>
- 4.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
- 5.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<u>개발계획</u>
- 6.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
- 7.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
- 8.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<u>개발계획</u>
- 9. 상수원의 확보 및 <u>대체수원</u> (代替水源)의 개발계획
- 10. ~ 15. (생략)
- 16.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

①
국가수도기본계획
" <u>기본계획"</u> -
<u>.</u>
②기본계획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수도정책의 기본방향
4
<u>관리계획</u>
5
<u>관리계획</u>
6
<u>관리계획</u>
7
관리계획
8
<u>관리계획</u>
9 <u>관리, 대체</u>
수원(代替水源)의 확보계획
10. ~ 15. (현행과 같음)
16 수질 및 서비스 개

사항

17. ~ 1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환경부장관은 <u>종합계획</u>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<u>종합계</u> 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환경부장관은 <u>종합계획을 수</u>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(이하 이 항에서 "관계기관의 장"이라 한다) 와 미리 협의하여야 <u>하며 수립된 존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</u>한다.

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 의 변경 등으로 <u>종합계획</u>의 중 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 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

17. ~ 19. (현행과 같음)
20. 제1호에서 제19호까지의 내
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
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
공업용수도의 설치・관리에
관한 계획
③ <u>기본계획</u>
<u>기본계</u>
<u>থ</u>
4 <u>기본계획을 수립</u>
<u>하거나 변경(제2항제20호에 관</u> 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
려면 시·도지사
<u> </u>
<u> </u>
⑤
<u>기본계획</u>

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에게 <u>수도정비기본계획</u>의 변경을 요 청할 수 있다.

- ⑥환경부장관은 <u>종합계획</u>이 수 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.
- 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 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8조(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 용수도) ① (생 략)
 - ② 국가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(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 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)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

수도정비계획
⑥ <u>기본계획</u>
<u>.</u>
⑦
기본계획
<u>기본계획</u>
<u>지체 없이 고</u>
<u>시하여야 한다</u> .
제48조(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
용수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제4조제1항
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

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	
게 할 수 있다.	